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14. 10. 1.

행정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가. 제출일자 : 2014년 9월 12일

나. 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 : 2014년 9월 17일 회부

라. 상정일자 : 제183회 영등포구의회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위원회
(2014. 9. 25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행정국장 김정진)

가. 제안이유

- 영등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·대학입학정보센터의 설치·운영을 포함하는 우리구 교육전반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체계화·법규화함으로써 교육격차 해소와 우수 인재양성으로 앞서가는 교육도시 영등포를 조성코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~2조)
- 센터 명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(안 제3조)
-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(안 제4조)
- 센터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(안 제5조)

- 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(안 제6조)
- 센터의 이용대상, 운영시간 및 이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(안 제7~10조)
- 센터의 운영을 위한 교육네트워크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(안 제11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김기영)

- 본 조례안은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하고 국민에게 자기주도 학습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의 설치 근거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조례임.
- 주요내용을 살펴보면
 -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,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을 위한 공간 활용, 전문인력 배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,
 - 안 제5조에는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의 주요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고,
 - 안 제6조에는 지원센터 프로그램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위탁운영과 예산지원 상황을 규정하였으며,
 -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에 지원센터의 이용대상과 프로그램 이용료 또는 참가자에 대해 이용료의 징수 및 감면, 이용료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,
 - 안 제11조에 지원센터의 사업개발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한 교육 네트워크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.
- 본 조례안은 창의적 인재 육성과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맞는 다양한 교육정보 및 체험기회를 제공하고, 교육격차 해소와 인재 양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,
-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서는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사회가 아니라 가지고 있는 지식을 잘 활용하고,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해내는 능력을 발휘하는

창의적 인재를 요구하고 있으며,

- 특히 2011학년도부터 특목고 입시제도가 자기주도학습전형으로 변경되었고, 대학입시에 서도 자기주도학습능력을 갖춘 학생을 선발하는 입학사정관제가 도입되었으며, 2016년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실시에 따라 진로탐색활동의 강화가 예상되는 등 전문적인 진로 교육과 자기주도학습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, 변화하는 입시전형에 대처하 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습능력 신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,

- 법체제나 조문 검토결과

- 「지방자치법」 제66의3조(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) 및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(비용추계서 작성)에 따르면 ‘지방자치단체의 장 이 예산상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 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’ 고 규정되어 있으나 해당 안건의 경우 비용추계서가 미 첨부된 바,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소요예산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,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44조에 ‘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 례로 정한다’ 는 규정에 따라 사업 추진의 근거가 되는 조례 제정 후에 사업 계획 및 예산 편성이 이루어졌어야 하나,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에 지원센터 기능의 하나인 ‘진로 직업체험센터’ 설치에 따른 예산 4억 4,817만원이 기 편성되었고, 관련 사업이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는 바, 앞으로는 근거법령 제정 후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절차 를 준수하여야 할 것이며,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36조 및 제139조에 따라 ‘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 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,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 다’ 고 규정되어 있음에도, 안 제9조(이용료의 징수)제1항 및 제2항에는 ‘지원센터의 프 로그램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수강료 또는 참가료 등(이하 “이용료” 라 한다)을 징수할 수 있으며, 이용료는 수익자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한다’ 로만 규정

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징수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바, 사용료 징수대상 및 금액과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을 준용해서 조례상에 별도로 규정하거나 최소한 규칙에서 정할 수 있도록 1)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됨. 참고로 관련 조례를 제정 시행중인 4개 자치구 중 3개 자치구²⁾는 이용료 징수 기준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명문화하였고, 1개 자치구³⁾는 우리구와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음.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-
- 1) 법제처에서는 적어도 조례에 사용료·수수료의 상한이나 부과기준 등 부과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한 후에 규칙으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방안을 권고
 - 2) 강동구, 성북구, 경남 진주시
 - 3) 성동구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제 6 호
----------	-------

제출연월일 : 2014. 9.
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영등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·대학입학정보센터의 설치·운영을 포함하는 우리구 교육전반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체계화·법규화함으로써 교육격차 해소와 우수 인재양성으로 앞서가는 교육도시 영등포를 조성코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~2조)
- 나. 센터 명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(안 제3조)
- 다.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(안 제4조)
- 라. 센터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(안 제5조)
- 마. 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(안 제6조)
- 바. 센터의 이용대상, 운영시간 및 이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(안 제7~10조)
- 사. 센터의 운영을 위한 교육네트워크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(안 제11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규 : 「지방자치법」 제144조
- 나. 예산조치 : 예산조치 필요
- 다. 협의사항
 - (1) 규제심사 : 해당없음
 - (2) 부패영향평가 : 평가실시(의견없음)
 - (3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평가실시(의견없음)
- 라. 기 타
 - (1) 입법예고(2014.8.7~8.27, 20일간) : 의견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구민에게 다양한 교육정보 및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교육 격차 해소와 인재양성 등 교육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영등포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영등포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”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가 구민의 자기주도 학습 개선을 위해 설치하는 교육기반시설을 말한다.
2. “영등포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운영”이란 교육기반시설을 활용한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및 구민 누구나 주체적 학습능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체의 프로그램 운영을 포함한다.

제3조(명칭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구민의 이용 편의성과 접근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영등포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(이하 “지원센터”라 한다)에 대한 별도의 명칭을 정할 수 있다.

제4조(설치 및 운영) ① 구청장은 학습에 필요한 프로그램, 체험학습 등 다양한 교육지원사업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지원센터는 학습에 필요한 스스로의 능력치를 본인이 직접 설계하고 수행함으로써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강화시키고, 자신에게 맞는 진로적성 교육 및 학습법과 학습전략을 통해 학력신장과 인성 발달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한다.

③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.

제5조(기능 등)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자기주도학습 등 학습지원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
2. 인성, 적성 및 진로에 관한 프로그램
3.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
4. 각종 교육정보 수집 및 제공
5. 교육지원에 관한 다양한 네트워크 협의체 구성·운영
6. 방과후 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
7. 그 밖에 교육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6조(위탁운영)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촉진,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.

- ② 위탁운영 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- ③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

제7조(이용대상) ① 지원센터의 이용대상은 관내학교에 재학중인 학생, 학부모, 교사로 한다.

- ② 수요자 중심의 자기주도학습이 정착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에 따라 대상을 변경하거나 확대할 수 있다.

제8조(운영시간) 운영시간은 이용자 편의와 교육적 수요를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다.

제9조(이용료의 징수)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수강료 또는 참가료 등(이하“이용료”라 한다)을 징수할 수 있다.

- ② 이용료는 수익자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, 교육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무료로 할 수 있다.

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.

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가족
2.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
3. 「한부모가족 지원법」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청소년
4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제10조(이용료의 반환)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.

1. 재해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
2. 시설의 특별한 사정으로 시설 운영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에는 전액 반환
3. 수강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수강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.

제11조(교육 네트워크 구성)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사업개발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내 초. 중. 고, 교육지원청, 교육기관, 지역교육관련단체 등과 협력으로 다양한 교육 네트워크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필요시 교육 네트워크를 통해 구의 교육현안 논의,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참석자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